

수원지방법원 2020. 1. 9 선고 2018나89022(본소), 2018나89039(반소) 판결 [매매대금반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의 소]

재판경과

수원지방법원 2020. 1. 9 선고 2018나89022(본소), 2018나89039(반소)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11. 8 선고 2016가단530365, 2018가단522153 판결

전문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A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H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웅

담당변호사 이은태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B

피고, 항소인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이정세

변론 종결 2019. 11. 21

판결선 고 2020. 1. 9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11. 8. 선고 2016가단530365(본소), 2018가단 522153(반소)

판결

주 문

1. 피고(반소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이하 '피고'라 한다) B와 피고 C은 각자 원고(반소피고,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1억 1,62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값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 B로부터 2억 1,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 B에게 경기 가평군 D 임야 532하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가평등기소 2004. 1. 26. 접수 제129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 청구를 모두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 청구를 모두 인용하고 피고 B의 반소 청구를기각하였는데,이에 대하여 피고들이 본소에 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본소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추가 판단 부분

가. 먼저, 피고 C은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 입회인에 불과하므로 원고에게 아무런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계약 당시 작성된 매매계약서에 피고 C 역시 피고 B와 함께 특약사항 위반에 따른 변상의 주체로 명시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나. 또한, 피고들은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행사기간이 1년이므로 원고의 청구권은 위 기간의 경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민법 제572조에서 정한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기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계약의 특약사항에 따른 책임을 구하는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의 피고들의 위주장은 이유 없다.

다. 끝으로, 피고들은 이 사건 계약 당시 이 사건 하천의 소유권 이전은 처음부터 원 시적 불능이었으므로 원시적 불능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10년의 소멸시효경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 당시부터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이 사건 하천을 불하받는 것이 원시적으로 불가능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2015. 12. 1.경 한국수력원자력이 F과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이 사건 하천의 불하가 종국적으로 불가능하게 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 판사 이동식 판사 이석준 판사 허서운

1) 피고는 항소이유서에서 '피고의 당사자 적격 여부'라는 제목 아래 위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를 본안

전 항변을 하는 것으로 선택한다고 하더라도, 이행의 소에서는 원고에 의하여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피고 적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